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869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백지훈	김기란	이만형	02/26 박형중		
협 조					

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계획

2016. 2.

교육문화복지국

어르신복지과

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계획

자신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갖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게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방법 및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홈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질성 회복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운영장소 : 성북구 안암동1가 240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Ⅱ 운영방법

○ 운영주체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탁 운영
○ 입주인원 : 2명
○ 입주기준 :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중 선발
○ 입주기간 : 기본 6개월. 필요시 연장 6개월
○ 주요프로그램
- 중증장애인들의 시장보기 및 요리실습
- 일상 생활 관리(은행업무, 관공서업무등 익히기)
-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질성 회복
- 탈 시설이후 자신감을 갖을수 있는 과정
▷ 프로그램코디네이터 상주 운영

Ⅲ 예산지원

○ 지원예산 : 27,000천원(구비)

○ 보조금 구성 (단위: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
인건비	18,000 × 1명 = 18,000	18,000	
운영비	750 × 12개월 = 9,000	9,000	
총 계		27,000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보조금 신청 : 매분기말 까지 신청서 징구

○ 정산방법 : 매 분기초 지출증빙서 첨부 정산

Ⅳ 지도점검실시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 개 요

- 점검기간 : 상,하반기 각1회
- 점 검 자 : 장애인지원팀장 외 담당직원
- 점검방법 : 현지 출장 점검
- 점검내용 : 각종 보조금 집행관련 전반사항

○ 적출사항에 대한 시정 및 문제점에 대한 강구, 제도개선

○ 보조금 등 부당·불법 집행액 환수

○ 개별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하여 신분·재정적 조치요구 등

Ⅳ 행정사항

○ 성북소리, 홈페이지 등 홍보

붙임 : 2016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협약서 1부. 끝.